

‘만삭아내 살인 무죄’ 확정 판결도 못 막는 ‘수십억 보험금’ 논란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 혐의 무죄·치사 혐의 유죄” 95억원 보험금 소송에서도 판단 엇갈려 대법서 첫 승소 확정...나머지도 진행 중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 보험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이 최근 처음으로 승소를 확정 받았다. 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나머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될 경우 그가 받게 될 보험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도 지난 19일 두 사람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만삭이었던 아내 B씨를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량과 추돌했다. 그런데 당시 B씨는 2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돼 그가 사망할 경우 최대 95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보험금 액수와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약 360만원)를 고려했을 때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졸음운전인지 사고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재상고심에서 금고 2년 형이 확정됐다. 결국 B씨 앞으로 20개가 넘는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대해선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가입 경위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하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무죄 확정 이후 약 5년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그리고 판결은 엇갈렸다. 보험금 소송 주요 쟁점 중 하나는 B씨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A씨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B씨가 보험

계약 당시 약관을 이해했다고 봤다.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 2심 재판부는 “B씨가 보험모집인 등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한다는 점을 이해 못 한 채 자필로 피보험자란에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반면 보험사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B씨가 한국의 보험제도가 계약 체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B씨의 진정한 동의 의사 확인에 필요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재판부는 “B씨와 같은 사람은 한국어 능력도 부족하고 언제라도 도박보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최이슬기자



여름편으로 교체된 광화문 글판 30일 오전 서울 중로구 교보생명빌딩 외벽의 광화문 글판이 여름을 맞아 새롭게 교체돼 있다. 이번 광화문 글판 여름편은 안희연 시인의 시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에서 가져왔다.

광주 쿠광물류2센터 공사, 원·하청 건설대금 협의 진통

계약 분량 초과 OK, 물가상승분은 지부진 다음달 말 준공...“최저가 낙찰 등 폐해” 분석

광주 광산구에 지어지고 있는 쿠광물류2센터 공사 현장에서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건설대금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하도급사들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대금의 규모를 두고 원·하청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 공정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어 하도급사들이 체납을 우려하고 있다. 30일 쿠광제2물류센터 공사현장 하도급업체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장에 투입된 A 골조 회사는 지난 2021년 11월 원청인 B사와 98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 도중 A사는 지난해 7월 기성청구서를 작성하다 기간 발주해온 일감이 앞서 검토했던 계약 분량을 넘어선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물가 변동률에 따른 자체 값 인상을 꺾으면서 결국 같은해 10월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에 A사는 지난 1월 B사로부터 계약 분량을 초과해 지출된 대금 20억여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지만 물가상승분에 따른 자체 계산 금액 15억여 원에 대해서는 협의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장 대부분 업체는 A사처럼 원청과 건설대

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에는 업체들의 임금 체불로 현장이 멈춰서기도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골조공사 전체 직종 건설노동자 300여명에 체불된 임금 총액이 6억 9400만원에 달하며, 앞으로 지급받을 임금 총액도 최대 5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사는 준공 직후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다음달 24일이 준공 만기일이나 B사는 지난주 물가상승분에 따른 우리측 제시금 중 불과 1억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한 뒤 현장에서 빠지려는 것 아닌가”라며 “과거 B사와 일을 했을 때도 지난해 9월에 받았어야 할 7억여 원을 지난 달에야 정산받았다. 뒤늦은 정산으로 파산에 가까운 위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빚을 매꾸기 위해 건설 대금이 완전히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현장을 찾아야 한다. 카드 돌려막기와 똑같은 셈”이라며 “원청은 정산을 빨리 마무리지어 하도급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B사 현장사무소는 “협의 내용은 분사와 의논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상황이 최저가 낙찰제와 같은 공사 현장 내 계약 폐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민주노동 건설노조 한 관계자는 “원청은 최저가 낙찰제로 현장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턴키 등 다소 불리한 계약을 맺은 뒤 그 피해를 하청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대금 정산 대신 어음 등으로 매꾸는 경우도 많다”며 “법개정 등을 통해 원청과 하청의 갈등에서 대형 발주처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평동산단 내 쿠광물류2센터는 대지면적 4만9111㎡에 연면적 16만8133㎡(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총 공사비는 1120억원 규모다. 임형택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